

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2일

파 주 시 장

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- 국방정책 변화에 대한 파주시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공공사업 관련 군 작전성 검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·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안보자문관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문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등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, 제4조의2제1항)
- 나. 평화안보자문관의 자격요건 단서조항 신설(안 제4조의2제2항)
- 다. 평화안보자문관의 임기 변경(안 제4조의2제3항)
- 라. 평화안보자문관의 역할 명확화(안 제4조의2제4항)
- 마. 평화안보자문관의 해촉 근거 신설(안 제4조의2제6항)
- 바.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등(안 제7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도시계획과 군관협력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도시계획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)940-5811 / Fax 031)940-4709 / 이메일 ganggi@korea.kr

PAJU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군부대 교류·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